전기절약,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

관 세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준수 홍보 강화

1. 수출입물류과 - 2638('12.8.2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해상·항공 수출입적하목록 제출시기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시범운영기간(8.27~9.9)이 종료됨에 따라 '12.9.10부터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및 항공수입적하목록 정정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니, 각 세관장은 선사·항공사에 홍보 등을 통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**

구분	제출시기
해상	ㅇ(원칙)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(근거리) 선박에 적재하기전, 출항 30분 마감제출 ㅇ(벌크, 공컨테이너, 환적화물)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(선상수출신고물품)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
항공	ㅇ항공기에 적재하기 전, 출항 30분전 마감제출

ㅇ 해상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은 필리핀, 베트남, 캄보디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를 포함

ㅇ 해상환적화물(환적 공컨테이너 포함)의 경우 종전과 같이 별도 통보시까지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

ㅇ 유의사항

- 1차 마감전송 후 일부 B/L의 중·수량을 수정하여 2차 또는 3차 최종마감시 재전송하는 경우는 1차 전송시간 인정
  ※ 대상항목 : B/L의 중·수량, 수출신고서 항목의 중·수량

- 선사가 중·수량 이외의 항목을 수정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최종 전송시간으로 처리

- 1차 마감 전송 후 동일데이터를 2차 또는 3차 최종마감시에 재전송하는

경우에는 제출시기가 위반될 수 있으니 전송시 유의할 것.

□ **항공수입적하목록 정정절차**

○ 정보의 정확성 및 위험관리와 직결된 House B/L의 추가·삭제, 명백한 품명 오류의 경우 항공사가 정정주체

- 다만, 특송화물의 경우는 특송업체가 정정주체

○ 포워더가 H B/L을 추가·삭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오류통보

□ **행정사항**

○ 선사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이 포워더 House B/L 지연제출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부과 유예(별도 지침 시달시까지)

○ 포워더의 House B/L 전송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오류통보하고, 적하목록 최종 마감전송 이후 정정조치

- 1차 마감전송이후 중·수량(수출신고서 중·수량 포함) 이외의 항목을 수정하여 2차마감 또는 3차 최종마감시 전송하는 경우

→ 중계사업자 시스템 수정불가토록 조치(중계사업자)

- 1차 마감전송에서 누락된 House B/L을 2차마감 또는 3차 최종마감시 전송하는 경우(과태료부과대상)

→ 관세청시스템에서 제출시기를 체크하여 B/L 누락건으로 오류통보 조치

○ 세관장은 9.10~9.14(1주일)까지 발생한 제출시기 위반에 대하여 사유를 파악하여 익일까지 보고할 것.

끝.

관 세 청 장

수신자 전국세관 각 과(직속기관 제외), 정보기획과장, 정보관리과장, 항공사협의회, 특송협의회, 선주협회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, 한중카페리협회, KCNET, KTNET, KLNET

관세행정관 서기관 수출입물류과장 전결 2012. 9. 7.

협조자

시행 수출입물류과-2744 접수

우 302-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수출입물류과 / http://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481-7823 팩스번호 042-481-7829 / ywjpine@hanmail.net / 대국민 공개